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등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 추가(시행령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자목 신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에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을 추가하고, 여객시설에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추가함

나.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규정(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 개정)

궤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으로 정하고, 궤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보행접근로, 교통약자가 통행가능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승강장 등으로 정하고자 함

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항 등 규정(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일부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일부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0항”을 “법 제16조제6항 및 제12항”으로, “운영”을 “운영의 범위 및 운영”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

자.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별표 2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교통약 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저상형)	○	○	○	○		○		○	○	
	시내버스(일반형)	○	○	○	○		○		○	○	
	시내버스(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마을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철도		○	○	○			○		○	○	○
궤도차량		○	○	○			○		○	○	○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교통약 자가 통 행 가능 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 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 레이터	계단	교통약자가 이용가능한 화장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 역 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	○
궤도시설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자 블록 및 점자	유도 및 안 내 시설	경보 및 피 난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버스정류장	○	○								○	
철도 역사	○	○	○	○	○	○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궤도시설	○	○	○	○		○		○			○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4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이동편의시설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u>
<u><신 설></u>	<u>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일부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u>법 제16조제10항</u>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u>운영</u>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u>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제12항</u> ----- ----- <u>운영의 범위 및 운영</u>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